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. 12. 6 선고 2024가단2425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2. 6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. 3. 25.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4. 3. 26. 접수 제139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아래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.

가. 피보전채권: 원고의 C에 대한 2023. 4. 13. 대출금 1억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나. 사해행위: C이 2024. 3. 25.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변론 없이 하는 판결)

판사 염원섭

별지